

『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개정, 『경상북도사무 위임조례』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의 실현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추가
- 공용시설보호지구 내 어린이집 설립 허용 (제51조)
-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구역의 7층 이하로 건축 제한가능 (제58조의2)
-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당해 대지는 허용 건폐율 90%, 허용 용적률의 150퍼센트(%)로 강화 또는 완화 (제67조의 2)
- 국민권익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에 대한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개정 (제69조, 제71조)
 - “제69조제4항 제1호 시의회 의원 3인”을
 - “제69조제4항 시의회 의원 3인(소관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)”로
- 공동주택 규제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조례 보완 개정 (제75조의2)
-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체육시설, 세차장 등 설치 허용 (별표 3)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』에 따른 동(洞) 지역 생산녹지지역에 첨단업종 공장 산증설 허용으로 조례 보완 개정 (별표 15)
-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립주택, 수리점, 주유소 등 설치 허용(별표19)
- 도시정비 촉진을 위하여 일반, 근린상업지역 등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립 시 공동주택 부분이 70퍼센트(%)이하를 90퍼센트(%) 이하로 조정 및 그에 따른 용적률 등을 현주거지역 수준(500퍼센트)으로 하향조정 (제64조, 별표8, 별표9)
- 농림지역내에서 수련시설 모두 허용 (별표 20)
- 기타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사항 개정 (제17조, 제66조, 별표7, 별표8, 별표9)
- 제69조 4항의 도시계획위원회

4. 참고사항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

5. 검토의견

- 금번 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 및 『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』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으로서 그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